

(적용 범위)

제 1 조 당관이 숙박손님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관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 2 조 당관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숙박손님은 다음 사항을 당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성함

(2)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각

(3) 숙박요금 (원칙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손님이 숙박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날짜를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신청할 경우 , 당관은 그 신청이 있었던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음식 알레르기에 관해서)

안심하고 식사를 하시기 위해 가능한 한 대응합니다만, 계란, 우유, 밀, 새우, 게, 소바, 땅콩등의 가공식품에 대해서 표시의무가 없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 3 조 숙박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관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요금을 게시하고, 또는 전화로 잘못된 숙박요금을 안내해, 해당숙박요금에 따라 숙박계약 신청이 이루어져, 당관이 승낙한 경우, 해당요금이 그 전후의 숙박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할 경우, 해당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등의 저렴한 이유의 표시 또는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요금은 무효로하고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3. 당관은 숙박예정날보다 이전의 임의의 날에, 숙박손님으로부터 받은 연락처에 예약확인 전화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4.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경우는 숙박기간 (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 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관이 정한 예약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5. 예약금은 먼저 숙박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6. 제 2 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실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예약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당관이 그 취지를 숙박손님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예약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 4 조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관은 계약의 성립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데 있어서 당관이 전조 제 2 항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 5 조 당관은 다음에 기재된 경우에는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관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만, 불편, 요구를 제기하는 등, 당관내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가'에서 '다'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가.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 77호) 제 2조 제 2호에 규정하는 폭력조직(이하 '폭력조직'이라 한다), 동조 제 2조 제 6호에 규정하는 폭력조직원과(이하 '폭력조직원'이라 한다), 폭력조직의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그외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조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손님에게 현저히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8) 숙박에 관계되어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어려운 상황일 때.

(10) 시가현 여관의 위생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 7조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

(11) 숙박예약을 한 사람이 자기의 상업 목적을 숨기고 신청했을 때

(숙박손님의 계약해제권)

제 6 조 숙박손님은 당관에 신청하고 숙박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2. 당관은 숙박손님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관이 예약금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으나 지불하기 전에 숙박손님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는 별표 제 2 에 기재한 바에 따라 취소요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관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손님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취소요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관이 숙박손님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당관은 숙박손님이 연락없이 숙박 당일의 오후 8 시 (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된 경우는 그 시각에서 2 시간 지난 시각)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으실 때에는 해당 숙박계약은 숙박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관의 계약 해제권)

제7조 당관은 다음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손님이 숙박에 관해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풍속을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2) 숙박손님이 당관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만, 불편, 요구를 제기하는 등, 당관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인정됐을 때.
- (3) 숙박손님이 다음의 '가'에서 '다'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가. 폭력조직, 폭력조직원, 폭력조직의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그외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조직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
- (4) 숙박손님이 다른 숙박손님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5) 당관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 (6) 숙박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 (7) 숙박에 관해서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이 어려운 상황일 때.
- (9) 시가현 여관의 위생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 7 조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
- (10)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방용 설비등에 장난을 하거나 그 외 당관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 (11) 숙박 계약 성립후에 제 5 조(11)에 정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그 해제 사유가 전항(8)및(9)에 경우는 숙박손님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외의 해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도 위약금으로서 지불 받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 8 조 숙박손님은 숙박당일, 당관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 숙박자의 성함·연령·성별·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여권번호·입국지역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각
- (4)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손님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할 경우는 사전에 전항 등록시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의 사용시간)

제9조 숙박손님이 당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외의 객실사용에 응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 (1)초과 3 시간까지는 객실료 상당액의 30%
- (2)초과 6 시간까지는 객실료 상당액의 60%

(3)초과 6 시간까지는 객실료 상당액의 100%

3.전항의 객실료 상당액은, 기본 숙박료의 70%입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 10 조 숙박손님은 당관 관내에서는 당관이 정한 이용규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 11 조 당관의 주요시설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시설등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 장소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 프런트·캐시어 등 서비스 시간 :

가. 폐문시간 없습니다

나. 프런트서비스 오전 7시 00 분부터 오후 10시 00 분

(2) 음식등(시설) 서비스 시간 :

가. 아침식사 오전 7시 30 분부터 오전 9시 00 분

나. 점심식사 오전 12시 00 분부터 오후 3시 00 분

다. 저녁식사 오후 6시 00 분부터 오후 8시 00 분

라. 기타 음식등

카페테라스『하나운수이』 오전 7시 00 분부터 오후 10시 00 분

나이트라운지『아마레』 오후 8시 00 분부터 오전 0시 00 분

토속주&면『세미마루테이』 오후 8시 30 분부터 오전 00시 30 분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

가. 매점『라쿠이치』 오전 7시 00 분부터 오후 10시 00 분

나. 게임센터 오후 3시 00 분부터 오전 0시 00 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요금의 지불)

제 12 조 숙박손님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숙박손님의 출발시 또는 당관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관이 숙박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한 후, 숙박손님의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됩니다.

(당관의 책임)

제 13 조 당관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손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관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유에 인한 것이 아닐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당관은 소방기관으로부터 방화기준 적합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4 조 당관은 숙박손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손님의 이해를 받고 될수있는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을 할수 없을 때에는 취소요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손님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당관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5 조 숙박손님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손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관은 15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당관은 15 만엔 이상의 현금 또는 시가 15 만엔 상당 이상의 물품은 맡기실 수 없습니다.

3. 숙박손님이 당관 관내에 지참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손님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15 만엔을 한도로서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4. 당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도, 다음에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그외 이들에 준하는 것(자기테이프, 자기 디스크, CD 롬, 광디스크 등 정보 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등의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할수 있는 기억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숙박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 조 숙박손님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전에 당관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손님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에 건네드립니다.

2. 숙박손님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관에 잊어버리고 두고가신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에는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과 함께 그 지시를 구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7 일간 보관하고 그 후 근처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 숙박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관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으로,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 조 숙박손님이 당관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차량의 키를 기탁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관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손님의 책임)

제 18 조 숙박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고객님의 당관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주시시오.

별표 제 1 숙박요금의 산정 방법 (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관계)

숙박손님이 지불해야 할 총액
<input type="checkbox"/> 숙박요금 내역 : 기본 숙박료 (입실료+아침·저녁 식사)
<input type="checkbox"/> 추가요금 내역 : 추가 음료 (아침·저녁식사 이외의 음식료) 및 기타 이용 요금
<input type="checkbox"/> 세금 내역 : 가. 소비세 나. 입탕세

1.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요금은 초등학교이하가 대상이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어른요금의 70%,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 침구만 제공했을 때는 30%를 받습니다. 침구 및 식사를 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1명 3,000엔(세금 별도)을 받습니다.

별표 제 2 위약금 (제 6 조제 2 항관계)

계약상 신청 인원수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3 일전	5 일전	7 일전	14 일전	30 일전
14 명까지	100%	50%	30%	20%	10%		
15~30 명	100%	50%	30%	30%	20%	10%	
31~100 명	100%	80%	30%	30%	20%	10%	10%
101 명 이상	100%	80%	50%	30%	30%	15%	10%

※다만 4/27~5/5 와 12/29~1/3 의 숙박의 경우는 신청 인원수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위약금이 됩니다.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불박·당일	전날	7 일전	20 일전
100%	50%	30%	20%

- (주)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와 관계없이 1 일분 (첫날) 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손님 (15 명이상) 의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 일전 (그 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날) 있어서의 숙박 인수의 10% (끝수가 났을 경우에는 올림) 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 숙박약관은 연회, 회의, 입욕등의 당일 이용손님에도 적용합니다.

(관할재판소와 준거법)

제 19 조 당관 및 숙박손님간에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법률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당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를 전속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2.당관의 약관은 정문을 일본어로 한다.

부칙

제 1 조 당관은 2019 년 3 월 3 일 국토 교통성의 공시하는 모델 숙박 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당관의 숙박 약관이라고 정해 동일하게 실행한다.

제 2 조 당관은 2019 년 3 월 3 일, 숙박 약관 제 3 조 2, 3, 제 5 조(4), (11), 제 7 조(2), (11), 2, 제 15 조 2, 4, 제 19 조를 각 신설해, 제 3 조 1 항, 제 6 조 2 항, 제 7 조(10), 제 14 조 2 항의 각 일부를 개정해, 동일하게 실행한다.